

의안번호	제 181 호
의결(보고) 년 월 일	2002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2002. 12. 18 .

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4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병역법 제78조의 시행에 따른 시군구병무위임업무의 폐지
- 시군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과명칭 조정
- 2003.1.1부터 “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”의 정상운영에 따른 “위생환경사업소”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

2. 주요골자

-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조제2항제2호사목)
- 과명칭변경 : 현장민원해결과 → 주민지원과(안 제3조제1항)
- “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”의 신설과 업무조정(안 제1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현장민원해결과”를 “주민지원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사.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주민지원과장

제12조제2호 및 동호 각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

가.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

나.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정화조 내부 청소관리 업무

라. 하수 및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·발전방안 모색

마. 기타 환경시설 운영을 위한 업무

별표 2중 사업소명의 위생환경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	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-1번지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)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중 “현장민원해결과”를 “주민지원과”로 한다.

